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정 2016.9.07. 제5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김해시복지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직원의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재단 일반직 전 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까지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임금피크제 대상자”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에 도달한 직원을 말한다.
3.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임금 감액을 기준이 되는 ‘피크임금’이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말 **기본급**을 말한다.
4. “기본급”이라 함은 보수규정상의 **본봉**(연봉제는 기본연봉의 기본급)을 말한다.
5. “최저임금”이란 함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말한다.

제4조(적용기간 및 임금 감액율) ①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도별 임금 감액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1차년도(만 58세) : 10%
2. 2차년도(만 59세) : 15%
3. 3차년도(만 60세) :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관련 정책 및 지침의 변경, 청년고용 목표 수정 등의 사유발생시 감액율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감액율이 증가할 경우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예산관리) 임금피크제 절감액 재원으로 신규직원의 보수를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원이 충당되지 못할 경우 총액인건비로 충당한다.

제6조(기본급 동결)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정책인상율과 자연승급분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기본급을 동결한다.

제7조(별도정원) ①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하여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 정원으로 관리한다.

②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정원으로 관리한다. 다만, 적용 대상자의 요청 또는 인사관리상 필요에 따라 별도직군 및 직급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적용받는 직원은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할 수 있다.

제9조(근로조건 등)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의 근무시간 및 휴가 등의 근로조건과 기타사항에 대하여 이 지침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취업규정」, 「인사관리규정」 등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정부의 지침 또는 재단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16.9.07. 제52호)

이 규정은 201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